

항소절차

쇼셜세큐리티 사무국은 당신의 신체장애자혜택 신청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혜택이나 혜택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당신 케이스의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당신이 장애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적격자거나 없는 부적격자이거나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당신에게 결정을 알리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케이스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항소절차라고 합니다. 당신이 항소를 요구하면, 우리는 결정전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결정까지도 다시 검토하여, 만약에 잘못 내려진 결정이었다면, 고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당신의 지역 쇼셜세큐리티 사무실에 전화 하십시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항소할수 있습니까?

당신이 항소하기를 원하시면, 결정편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합니다. 우리는 결정편지 발송후 5일 이내에는 당신이 당연히 전달받았으리라 가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못받았다거나 더 늦게 받았다면 그 이유를 증명하여야합니다.

항소절차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항소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판사와의 청문
- 고등판사의 재심
- 연방법원의 검토

우리가 당신에게 보내는 결정편지에는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당신의 항소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쇼셜세큐리티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본인이 직접 항소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호사를 선정할 수 도있고 친구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사람을 선정하여 도움을 청하였을 경우 그 사람을 당신의 "변호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변호인을 마치 당신과 같이 상대하여 일처리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변호인은 쇼셜세큐리티 사무국을 상대로 당신의 모든일을 대신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당신의 신청에 내리는 결정에관한 편지의 복사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변호인은 당신에게 변호비용을 사전에 쇼셜세큐리티 사무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승인 없이는 당신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하거나 수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변호인선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쇼셜세큐리티 사무국에 연락하십시오. 당신에게 쇼셜세큐리티와 당신의 변호인 권리(간행물 No. 05-10075)에관한 정보안내물을 드릴것입니다.

청문회

우리의 처음결정에 동의 하지않을 경우, 당신은 신체장애 여부에 관하여 당신이 장애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언제 당신의 장애상태가 시작하였는지 또는 끝났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장애 신청후 첫 결정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행정판사와 청문회를 가질 것입니다. 청문회는 보통 당신의 집으로부터 75 마일 내의 거리에서 열릴 것입니다. 행정판사가 언제 어디서 청문회가 열릴 것임을 알릴 것입니다. 당신과 만약, 당신이 변호인을 선정했다면, 그와 함께 청문회에 참석하여 행정판사와 얼굴을 맞대고 당신의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서류에 있는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행정판사는 당신에게 그리고 증인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변호인 역시 그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당신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청문회에 직접 참석을 원치 않으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합니다. 행정판사가 당신의 청문회참석이 케이스결정에 꼭 필요하다고 결정치 않으면, 그는 당신의 케이스에 있는 기록과 새롭게 제시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후에 우리는 행정판사의 결정을 편지로 보낼 것입니다.

고등판사

당신이 만약 행정판사의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소셜세큐리티의 고등판사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고등판사의 재심을 원할 경우, 당신의 신청을 도울 것입니다. 고등판사는 재심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행정판사의 결정이 올바르게 결정되었다면, 고등판사의 재심을 거절할 것입니다. 만약에 고등판사가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의 케이스를 그가 직접 재심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당신의 케이스를 다시 행정판사에게 보내 좀더 자세한 검토와 결정을 위하여 보내질 것입니다. 당신은 고등판사의 결정편지를 받거나, 또는 행정판사에게 반환되었다는 공문을 받을 것입니다.

연방법원의 검토

만약에 당신이 고등판사의 재심결정에 동의 하지 않거나, 고등판사가 당신의 케이스를 재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어느 때든지 사회보장국의 무료전화번호 **1-800-772-1213**에 연락하시면 녹음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담당자와 직접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전화는 주초와 월초에는 제일 바쁩니다. 그러하니 급하지 않으시면 그때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하실 때는 항상 소셜세큐리티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귀가어둡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중 어느때든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무료 "TTY" 번호 **1-800-325-0778**에 연락하십시오. 인터넷 (Internet)에 접속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국에 관한 자료입수를 위해 <http://www.ssa.gov>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사회보장국은 무료전화 번호나 지역 사무실 전화 번호를 이용한 모든 통화내용은 비밀 취급이 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사회보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및 외부로 나가는 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토록 하고 있습니다.